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. 8. 18 선고 2020가단136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8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4. 12. 7. 접수 제269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에 의한 판결)

판사유지상

별지